#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 942

제출연월일: 2012. 11. . 제 출 자:중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-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개발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- 따라서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는 이를 폐지코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징물의 종류(안 제3조)
  - 구기, 문장(심벌마크), 브랜드슬로건, 캐릭터, 구목, 구화, 구조를 상징물로 함.
- 나. 상징물의 사용(안 제4조)
  -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,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
  - ·문장, 브랜드슬로건,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
- 다.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(안 제5조)
  - ·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, 품위유지 관리
  - · 상징물을 물품 등에 부착·공급, 다중 이용시설 등에 부착·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
  - · 구 관련 전시 · 행사 등에 상징물 사용 · 홍보
- 라. 상징물의 관련사업(안 제6조)
- · 상징물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, 수익사업 등의 시행 가능, 필요시 민간위탁 마. 상징물의 사용승인(안 제7조)
  - ·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 제작, 행사 등 이용 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·승인을 받아야 함
  - ·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예정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  - ·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 혹은 사용목적 위반 시 승인취소 가능
- 바. 사용료(안 제8조)
  - ·사용자의 사용료'납부 규정
  - · 구 후원사업 및 정부·교육기관에서 사용, 공공기관 등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면제
- 사. 위반시 조치사항(안 제9조)
  - ·사용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「상표법」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
- 아.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는 폐지함
- 3. 제정조례안 : 따로붙임
- 4. 참고사항
  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 없음.
  - 나. 규제사무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 없음
  - 다. 관련부서 승인(협의) : 해당없음
  - 라. 입법예고 사항`: 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2. 9. 17부터 2012. 10. 8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

#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상징물"이란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2. "문장(심벌마크)"이란 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. 3. "브랜드슬로건(Brand Slogan)"이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 현한 문구를 말한다.
- 4. "캐릭터(Character)"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'기 : 별표1

- 2. 문장(심벌마크) : 별표2 3. 브랜드슬로건 : 별표3

4. 캐릭터 : 별표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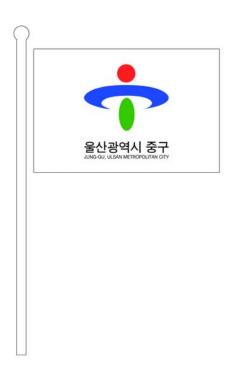
- 5. 구목(대나무), 구화(벚꽃), 구조(학) : 별표5
- 제4조(상징물의 사용)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,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, 울산광역시중 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.
  -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을 준용한다. ③ 문장, 브랜드슬로건,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.
- 제5조(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,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, 행사 등에 사용하여
- 제6조(상징물의 관련사업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제7조(상징물의 사용숭인 등)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
  -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첨부서 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8조(사용료)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,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.
  -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- 1.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

    - 2.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.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(위반시 조치사항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「상표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는 폐지한다.

# [별표1]

# 구 기

- 1. 규 격(가로 : 세로 = 3 : 2)
- 가. 깃면의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는 **3**대**2**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나.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.
  - 다. 깃면의 문장(심벌마크)과 로고타입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.



## 2. 색 상

가.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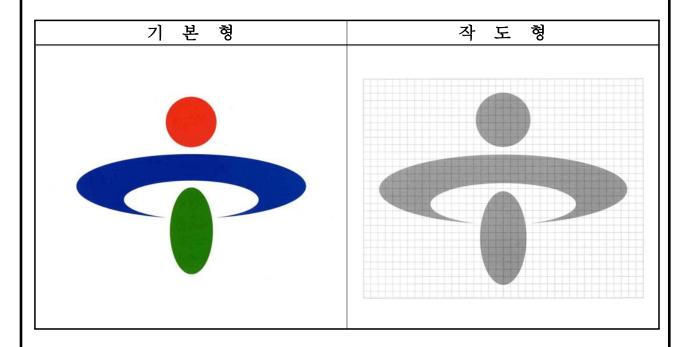
- (1) 바탕색은 하양
- (2) 상단의 원형은 빨강(DIC 156)
- (3) 중앙은 파랑(DIC 641)
- (4) 하단의 타원형은 초록(DIC 2561)
- (5) 글자는 검정(DIC 556)

(제153회-본회의제2차부록)

## [별표2]

# 문 장(심벌마크)

1. 기본형 및 작도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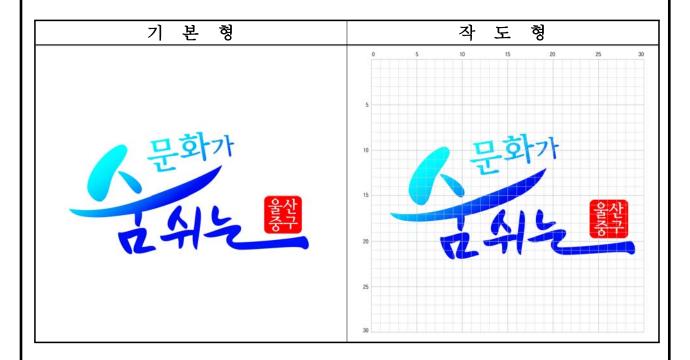
## 2. 의 미

- 가. 중구의 심벌마크는 중앙을 나타내는 한자의 『**中**』에서 유추한 것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, 인간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민과 행정의 화합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하는 자세를하고 있음.
- 나. 상단의 빨강은 구민과 행정의 열정과 태양을 나타냄
- 다. 중앙의 파랑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하는 편의 행정을 나타내며,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표현.
- 라. 하단의 초록은 쾌적한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의지를 표현.

# [별표3]

# 브랜드슬로건

1. 기본형 및 작도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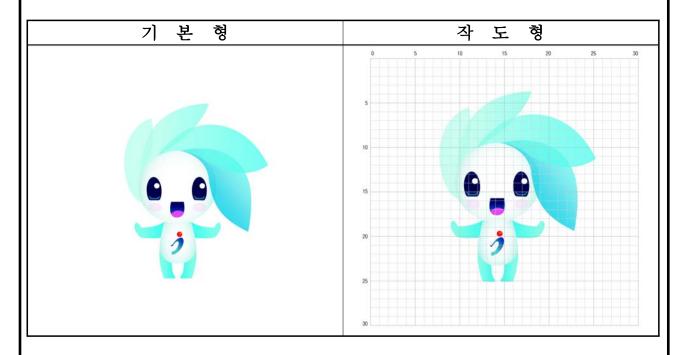
# 2. 의 미

○ 숨의 '∧', 'ᅮ'의 모양은 태화루, 향교, 동헌과 같은 기와집의 지붕과 처마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, 전통과 문화아래 위치한 울산 중구의 모습을 표현 (제153회-본회의제2차부록)

# [별표4]

# 캐 릭 터

1. 기본형 및 작도형



- 2. 이 름 : 가람이 (울산 중구를 감싸 안은 강의 요정)
- 3. 의 미
  - 울산 중구를 감싸고 흐르는 태화강의 이미지를 통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울산의 젖줄과도 같은 중구의 모습을 표현.
  - 머리부분의 물결이 태화강을 의미하며 그것이 감싸는 머리부분과 몸통 부분 표현을 통해 중구가 울산의 중심부라는 것을 나타냄
  - 밝고 깨끗한 색을 통해 발랄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

## [별지 제1호서식]

<b>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</b> (제7조제1항과 관련)			
신청인	기관 · 기업 · 단체명		
	성명 또는 대표자명		
	생년월일 또는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주 소		
	전 화 번 호(FAX)		
	홈페이지(e-Mail)		
사 용 상 징 물			
사 용 기 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사 용 목 적			
사 용 내 용			
(구	체적으로 작성)		
「으시고(여기조그 사지무 교기 조계 제7조제4청에 띠기 이어 가이			

「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.

>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#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

## <첨부 서류>

○ 개인 : 사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되는 경우)사본 각 1부

○ 법인 : 사용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

# [별지 제2호서식]

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(제7조제2항과 관련)				
신청인	기관·기업·단체명			
	성명 또는 대표자명			
	생년월일 또는			
	사업자등록번호			
	주 소			
	전 화 번 호(FAX)			
	홈페이지(e-Mail)			
٨	사 용 상 징 물			
٨	사 용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사 용 목 적			
	변 경 내 용 P체적으로 작성)			
「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」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				
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				

# 의 안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94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

#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11. 12(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1. 13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1. 30(금)
-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
  - O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개발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  - O 따라서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는 이를 폐지코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상징물의 종류(안 제3조)
  - 구기, 문장(심벌마크), 브랜드슬로건, 캐릭터, 구목, 구화, 구조를 상징물로 함.
- 나. 상징물의 사용(안 제4조)
  -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,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
  - 문장, 브랜드슬로건,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
- 다.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(안 제5조)
  -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, 품위유지 관리
  - · 상징물을 물품 등에 부착·공급, 다중 이용시설 등에 부착·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
  - 구 관련 전시·행사 등에 상징물 사용·홍보
- 라. 상징물의 관련사업(안 제6조)
  - 상징물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, 수익사업 등의 시행 가능, 필요시 민 가위탁
- 마. 상징물의 사용승인(안 제7조)
  -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 제작, 행사 등 이용 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・ 승인을 받아야 함
  - · 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예정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  -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 혹은 사용목적 위반 시 승인취소 가능
- 바. 사용료(안 제8조)
  -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규정
  - 구 후원사업 및 정부·교육기관에서 사용, 공공기관 등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면 제
- 사. 위반시 조치사항(안 제9조)
- 사용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「상표법」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
- 아.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는 폐지함

(제153회-본회의제2차부록)

#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예산담당 협의(비용추계서 별첨)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: 2012. 6. 13 ~ 7. 3.(의견없음)

#### 6. 검토의견

#### □ 관련법령검토

- ▶ 본 조례안은 「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」에 따라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심블마크, 로고 타입 작도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
- ▶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개발에 따라 구기 및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#### □ 주요내용

- ▶ 상징물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▶ 구기, 문장, 브랜드 슬로건, 캐릭터 등 상징물의 종류(안 제3조)
- ▶ 구기 등 상징물의 사용시기 (안 제4조)
- ▶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(안 제5조)
- ▶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( 안 제7조,제8조)

#### □ 검토의견

- ▶ 상징물은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이미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야 된다고 판단되는바,
- ▶ 우리 중구는 한글을 체계화 시킨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가 있음.
- ▶ 조례용어상 외래어가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외래어로 표기되어야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, 한글 표기가 어려운지 설명이 필요함.

### 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□ 수정내용
  - O 제3조제4호 캐릭터 [별표 4] 3. 의미
    - 내용 추가 : 가슴문양은 역동적이고 힘차게 도약하는 몸동작을 표현하는 모습
      - ※ 조례안 제2조제2호 '문장(심벌마크)', 제3호 '브랜드 슬로건(Brand Slogan), 제4호 캐릭터에 대하여 향후 적정한 순수 우리말이 있으면 개정 요구